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5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5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를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로명주소 사무와 개별공시지가 사무 중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 28.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문화예술과 소관 구 위임사무 중 공연사무를 삭제하고, 게임·음악 산업 및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구 위임사무를 현행 법률에 맞추어 정비함.(안 별표)
- 나.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과 건물번호 부여, 주소명판·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 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라 생각함.
○ 조례가 공포되면 의회에서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가?	○ 정원조례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기능직의 경우 자체 승진이나 시 집행부로의 전보가 가능한가?	○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이나 시 집행부로의 전보가 불가능하나, 근속승진은 가능함.
○ 기능직의 경우 자체 승진이나 전보에 제한이 있다면 조례개정이 타당한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구체적인 임용권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의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11호
의결 년월일	2007. 5. 31 (제136회)

제출년월일 : 2007. 5. 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를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로명주소 사무와 개별공시지가 사무 중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 4. 28.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문화예술과 소관 구 위임사무 중 공연사무를 삭제하고, 게임·

음악산업 및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구 위임사무를 현행 법률에 맞추어 정비함.(안 별표)

나.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과 건물번호 부여, 주소명판·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문화예술과란 중 1. 공연란을 삭제하고,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2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란 및 2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나. 영업의 승계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다. 폐업 및 직권말소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라. 사후관리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마. 허가취소 등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사. 폐쇄 및 수거 조치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아. 청문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자. 과태료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2의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나.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라. 영업의 승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마. 폐업 및 직권말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아.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 거·폐기(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자. 청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차. 과태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2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영화상영관, 비상설상영장 에 한함)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등 다.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라.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마. 영업의 승계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바. 폐업 및 직권말소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사. 행정처분 등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자. 폐쇄 및 수거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차. 과태료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별표의 제1호 도시계획과관에 8.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 및 9. 도로명 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8.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 (조사대상 필지과약,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산정자료 제출 등) 나.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산정지가 열람,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지가조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조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p>라. 개별공시지가의 정정</p> <p>마. 개별공시지가 통지</p> <p>바.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p>9. 도로명 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기초조사, 신청처리, 의견청취, 새주소위원회 자료 제출)</p> <p>나. 건물번호부여, 대장작성</p> <p>다. 도로명주소 이력관리</p> <p>라. 도로명주소 고지</p> <p>마.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p> <p>바. 도로명시설 등 일체조사 및 조치</p> <p>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제25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별표의 제3호 총무과란의 1. 소속공무원 의회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1. 소속공무원 의회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 지방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문화	1. 공연	가. 공연신고	· 「공연법」 제4조	구청장	----	〈삭제〉			---
예술과	2.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 음의 권한	가. 비디오물 시청제 공업의 등록 등 나. 복합유통·제공업 의 신고 및 등록 다.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음반 등 제작 업 및 배급업 제외)	· 「음반·비디오 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동법 제28조 · 동법 제30조			2.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나. 영업의 승계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다. 폐업 및 직권 말소(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u>라.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 (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마. 폐업</u> <u>바, 등록취소 등(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 업 제외)</u> <u>사. 과징금 부과 및 납부</u> <u>아. 청문(음반 등 제작 업 및 배급업 제외)</u> <u>자. 폐쇄 및 수거조치 (음반 등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제31조 · 동법 제34조 · 동법 제39조 · 동법 제40조 · 동법 제41조 · 동법 제42조 				<u>라. 사후관리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마. 허가취소 등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사. 폐쇄 및 수거 조치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아. 청문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자. 과태료 (게임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신설>					2의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나. 신고증·등록증 의 교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다. 신고 또는 등록사 항의 변경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라. 영업의 승계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u>마. 폐업 및 직권말소</u> (음반·음악영상물 제 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u>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u> (음반·음악영상물 제 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u>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u> (음반·음악영상물 제 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u>아. 영업소 폐쇄 및 음 반 등의 수거·폐기</u> (음반·음악영상물 제 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u>자. 청문</u> (음반·음악영상물 제 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u>차. 과태료</u> (음반·음악영상물 제 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 법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신 설>					2의3.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영화상영권, 비상설상영장에 한함)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등 다.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라.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변경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마. 영업의 승계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바. 폐업 및 직권말소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사. 행정처분 등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자, 폐쇄 및 수거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차. 과태료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제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 법 적 용	수 입 기 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 법 적 용	수 입 기 관
도시계획과	1.~7.(생략) 〈신설〉			구청장	----	1.~7. (현행과 같음) 8.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등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 등(조사대상 필지 파악, 개별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산정 자료 제출 등) 나.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산정지가 열람, 의 견청취 및 의견제출 지 가조사, 검증, 부동산평 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 수·조사,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 출 등)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 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무명	근거법 적 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신 설〉					9. 도로명 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u>라. 개별공시지가의 정정</u> <u>마. 개별공시지가 통지</u> <u>바.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u> <u>가.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u> (기초조사, 의견청취, 새주소 위원회 자료 제출) <u>나. 건물번호부여, 대장작성</u> <u>다. 도로명주소 이력관리</u> <u>라. 도로명주소 고지</u> <u>마.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정보의 공유</u> <u>바. 도로명시설 등 일제 조사 및 조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제25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 법적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 법적 적용	수입 기관
							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제작 · 설치 및 유지관리 아. 과태료 부과·징수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 시의회 사무국장 위임사항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기관	실과 소별	위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총무과	1. 소속공무원 의회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나. (생략) <u><신설></u>		의회사무국장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지방 별정직·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u>	·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